

통 일 정 책 특 별 위 원 회

통 특 제 6 호

788-2291

1991. 2. 7.

수 신 의 장

제 목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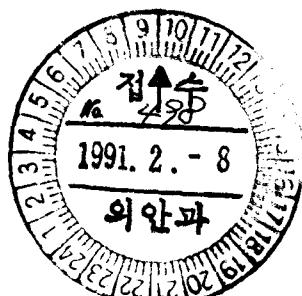
제 152회 국회(임시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91. 2. 7)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하고 이를 별첨과 같이 제안합니다.

첨 부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 500부 끝.

결재	담당	파자	국장	차장	총장	부의장	부의장	의장
	이한길	尚	李	·	總			李大鎬

報告 律上 程

[Signature]



통 일 정 책 특 별 위 원 회 위 원



한국

南北離散家族의生死確認을 위한決議案

議 案	
番 號	

提案年月日: 1991. 2. 7

提 案 者: 統一政策特別委員長

1. 提案經緯

統一政策特別委員會는 1991年 2月 4日 羅昌柱議員, 蔡映錫議員이 書面動議한 南北離散家族의生死確認을 위한決議案을 第152回 國會(臨時會)第2次委員會(1991年2月7日)에서 委員會案으로 採擇하여 提案하는 것임.

2. 提案理由

祖國光復以後 國土分斷과 뒤이은 6.25動亂으로 南北韓에는 1千萬에 이르는 離散家族이 發生하였고, 이들 離散家族은 그후 40余年이 지나는 동안 서로 生死조차도 모르고 지내온 것이 現實임.

이러한 狀況에서 수많은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조금이라도 解消하고자 努力하는 것이 國會의 責務라고 생각되어 우선 實現이 容易하다고 생각되는 生死確認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議會次元의 努力を 경주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하자는 趣旨에서 이 決議案을 提案하게 된 것임.

한국

3. 主 文

大韓民國 國會는 反目과 對立의 分斷 民族史를 극복하고 和解와 協力의 統一 民族史를 열어가야 할 오늘에 있어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은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民族的 課題라고 認識하며 南北의 一千萬 離散家族들과 苦痛을 함께 하고자 한다.

分斷과 戰爭의 試鍊이 아무리 가혹하다 하더라도 父母兄弟를 지척에 두고 生死조차 모르고 지내는 南北의 現實은 一千萬 離散家族들의 苦痛의 次元을 넘어 民族의 悲劇이요 또한 羞恥라 아니할 수 없다.

大韓民國 國會는 지난 70年代初 이래 있어온 南北間의 赤十字會談의 成果를 거두기를 期待해 왔으나 1985年 단 한차례의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만을 成事시켰을 뿐, 그동안 중단과 교착을 거듭함으로써 血肉間의 生死確認만이라도 所望하던 南北의 一千萬 離散家族들의 가슴에 큰 失望과 또다른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民族이 分斷된 지 어언 半世紀를 경과하면서 헤어질 당시의 어린 子女들은 이제 壯年期에 들어섰고, 父母들은 어느덧 人生의 黃昏期를 맞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現實을 考慮할 때 南北으로 흘어

한국

진 一千萬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이야말로 時間을 다투는 切迫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의 一千萬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조금이라
도 解消하고자 努力하는 것이 國會의 責務임을 認識하고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一.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 離散家族들의 再會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強調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그
들의 生死만이라도 確認하는 事業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도록 雙方
議會가 해당 赤十字社에 적극 勸告할 것을 北韓 最高人民會議에
提議한다.

一. 大韓民國 國會는 중단된 南北 赤十字會談의 조속한 再開 등을 위
해 雙方 議會가 할 수 있는 필요한 措置와 支援을 다 할 것을 北
韓 最高人民會議에促求한다.

한국